

# 8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윤선영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 목 차

- |                                       |   |
|---------------------------------------|---|
| 1. 서 언<br>2. 정보와 저작권<br>3. 정보공유와 저작권법 | 3. 1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관련 용어<br>3. 2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전송<br>4. 결 언 |
|---------------------------------------|---|

## 1. 서 언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회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를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보편화는 정보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의 유형도 그리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변하게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명과 함께 세계 역사에 대 전환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정보와 지식을 보다 많이 빠른 속도로 일반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컴퓨터의 급속한 성장은 이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편리한 장소에서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컴퓨터와 통신에 의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인쇄매체에 의해 유통되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창작자 즉,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하였다.

## 2. 정보와 저작권

도서관이 자료를 구입할 때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기본이다. 이용되지 않는 정보는 단순히 종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의 의미대로 따른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며 학술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널리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될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규제하는 저작권법이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그 변화에 부응하여 개정, 보완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이 허용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11종의 특례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여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정보 관리자나 이용자가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저작물을 복제와 인용에 의한 방법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사용은 그 허용범위와 제한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식사회에서도 여전히 비영리 목적이면서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명문화하여 허용할 것이다. 다만, 도서관은 달라진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인쇄매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해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처럼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대다수의 정보가 미국이나 일본 등 의 저작물인 현실은 이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저작물만이 디지털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있어서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점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용어의 정의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범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령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7월 27일에 관련 시행령이 공표, 발효되었다.

### 3. 정보공유와 저작권법

지식정보사회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의 재창출에 의해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므로서 사회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고도 정보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하며 정보의 디지털화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공유하려는 정보는 지적창작물로서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 즉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네트워크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와의 사용허락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도서관 시대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및 도서관 등에서 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정한 법 조항과 이후 공표한 관련 시행령의 내용이 현재의 우리 여건에서 도서관 등이 전자화를 추진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 등이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항목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 1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관련 용어

##### [제9조 2] 전송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복제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8조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먼저, “전송”의 정의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도서관 등이 우편은 물론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송신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도서관 등이나 개인 등이 이용자(상대)의 요구에 응하여 허용되는 여건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개인보다는 도서관 등이 자원공유를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에 대하여 그 방법의 범위를 일단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서관 등이 전송의 개념 정의만으로 정보를 편의에 따라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송신하여 이용에 제공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도서관 등이 “전송”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정보를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복제”를 정의함에서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라는 개정 내용은 그 밖의 방법이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컴퓨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기기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전자매체로 제작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가 의미하는 범위가 이전에 흔히 ‘복사’라고 알고 있는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광의: reproduction, 협의: recopy)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컴퓨터 등의 기기에 저장하는 것 즉, 디지털화 하는 것까지도 정보를 다른 표현방법으로 만든 것으로서 복제로 규정한 것이라 본다.

그리고, “전송권”은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로 신설한 것이다. 컴퓨터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하였다. 디지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관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복제권 및 전송권에 관한 권리처리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저작(권)자에게는 또 하나의 권리가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이용자 특히 정보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이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학술정보로서 조사·연구 목

적으로 이용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미국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국가에서는 저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용자에게도 편의를 주는 복제권기구를 설립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송권”的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복제전송권관리센터”的 설립을 허가하였다. 세계적으로 복사권관리기구는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일본의 “일본복사권센터”를 비롯하여 30개국 32단체가 국제 복사권기구연맹(IFRRO)의 회원으로 설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비중이 큰 복제권에 관련한 집중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전송권”的 신설에 따라 이번에 설립된 “한국복제전송권 관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존의 6개 단체를 발기인으로 시작하였다. 센터가 설립된 것은 국내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의 설립취지 및 운영에 대응하여 도서관 등의 학술정보를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2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전송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 도서관 등에 대한 면책범위에 있어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8조의 (2)항을 신설하였다.

####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1인 1 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2)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 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관내 이용자의 열람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에 의해 복제하거나 도서관간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도서관 등이 전자도서관 구축을 목표로 자관에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의 이용자 그리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LAN을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관 내 도서관 소장정보의 검색 및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 및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전산기 억장치에의 저장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송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해당 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관외에서의 이용 즉, 특정 시설이외의 관외로 원문정보가 복사 전송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웹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 및 전송권 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는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제3조의 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 2항 후단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 가. 당해 시설과 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는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을

###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 다.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저작권법 제28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하는 것도 동 시행령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저작권법 제282조와 관련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각 관종의 도서관이 전부 해당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하여서는 도서 등의 디지털화를 법적으로 허용함에 있어서, 아나로그 형태의 정보이용보다 심각하게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예견되는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 시행령에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였다. 이를 해석함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등이 해당한다.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및 국가의 지원 하에 구축 중인 전자도서관 시행 도서관으로 한정하므로 전자도서관 구축의 원활한 지원과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4. 결언

지식의 보고로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도서관은 상징적인 이름이 될 것처럼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하여 왔다. 도서로 대표되었던 정보다발을 보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던 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보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능이 확대 되었다. 고도정보화사회 즉, 지식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의 길잡이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달라지고, 도서관 직원은 본래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수할 때와는 달리 정보원에 접근하도록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까지 알려주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정보전문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저작권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개정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서울: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2000. 8. 9.)
- 오승조,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개정판. (서울: 박영사, 2000.)
- 이상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35, pp.75-83, 1996.
-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서울: 현암사, 2000.)
- 정찬모.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10(23), pp.1-18, 1998.
- 宮下佳之. 新たな コンテンツ 流通形態と 著作権法. コピライト, 2000. 4. pp.2-16.
- 大口一. 圖書館における複製サ-ビスと著作権. 圖書館雑誌, 94(2), pp.94-96. 2000. 2.
- Lee, Jones C. ディジタル圖書館におけるドキュメント・デリバリー. 情報管理, 42(11), pp.909-924, Feb. 2000.
- Edwards, J. & Tiwari, S. Policing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Copyright world, Mar. 2000, pp.14-17.
- Hart, M. The Future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networked age. Copyright world, Dec. 1999/Jan. 2000, pp.17-19.